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20. 05. 13. (수)	담당자	십대여성인권센터 권주리 사무국장 02-6348-1318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2-40 은혜빌딩 6,7층		http://www.teen-up.com/		
전 화	02-6348-1318	전 송	02-2690-1255	teen-up.com@hanmail.net

성착취 범죄의 창구로 이용돼 왔던 채팅앱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특정고시 결정을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20. 05. 11.(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 중 아동 및 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채팅 앱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하기로 하고 특정고시를 결정한 발표에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논 평

1. 한국사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거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 알고 있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 발표한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74.8%가 채팅 앱에서 이루어졌다고 조사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와 정부, 수사, 사법기관들은 수많은 피해와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도나 방송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령을 제정하지도 디지털 상 적극적인 방어막 구축을 통해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겨우 수사가 되었다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만 주었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착취자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던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성폭력, 성매매 강요/알선, 신체 사진·영상 촬영 강요 및 유포·협박, 그루밍 성범죄 등 다양한 성착취 범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렇게 진화, 발전하였고, 조주빈과 갓갓, 워치맨 등은 그렇게 우리 사

회가 키워왔던 것이다.

2. 이에 본 센터는 그동안 채팅앱을 통해 성착취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권한있는 정부의 각 부처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왔으며, 여성가족부는 여가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며 수년동안 방치해왔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11일, 드디어 여성가족부가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기 위해 특정고시를 결정하였음을 발표하고, ‘2020년 5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하게 되며 의견수렴,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고시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너무나 끔찍하고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결정된 발표임에 많은 아쉬움과 분노가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성가족부의 적극적 조치로써 채팅앱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특정고시 발표를 본 센터는 열렬히 환영한다. 그러나 채팅앱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에 있어서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극적 대응, 아니 더 나아가 무대응은 반드시 역사에서 기억될 것이다.

발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상의 성착취 범죄는 이미 채팅앱에서 다른 플랫폼들로 확산·이동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는 더욱 심화되고 변화하는 기술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추이에 비하면 한없이 늦은 조치이지만 그럼에도 본 센터는 정부가 이제껏 방치하였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에 대하여 문제를 인지하고 올바르게 규제해 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이번 조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강력히 바란다. <끝>